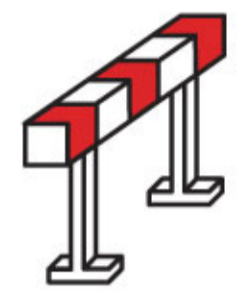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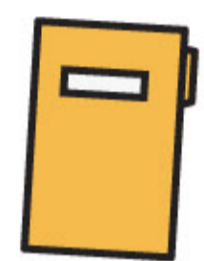


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진행 안내 및 실습기관 모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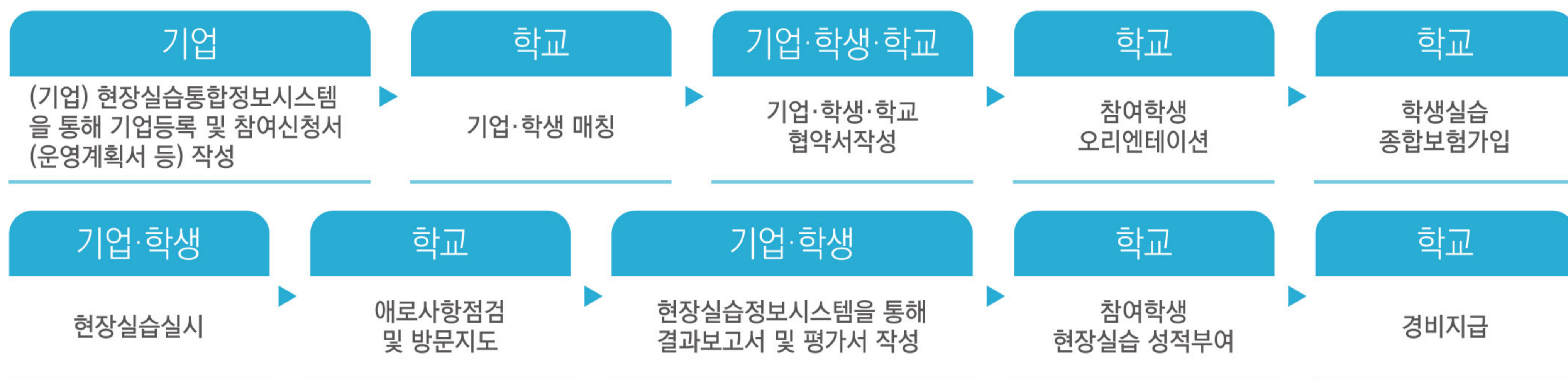


현장실습 교육이란?

한남대학교 재학 중인 3~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실습기관(기업)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교육 과정 (1일 8시간, 주 5일 근무)



현장실습 운영 절차 | 현장실습 통합정보시스템 lintern.hannam.ac.kr



※ 기업등록(회원가입의 개념)이 완료된 후 기업에서 참여신청서(운영계획 등)을 작성할 수 있음.



현장실습 일정 및 지원내용

· 16주 연속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(연속적으로 근무해야함)

구 분	장기현장실습 (16주)
실습일정	2021. 03. 02.(화) ~ 2021. 06. 18.(금)
실습지도비 (학교·기업)	200,000원
기업측 실습지원금 (기업·학생)	월 140만원 ※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기업측 지원금 부담이 필수이나 기업에 따라 다소 조정 가능
산재보험 가입 (기업·학생)	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 - 산재보험가입이 불가한 기관/기업은 참여 불가 - 현장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필수

📁 현장실습 주요내용

[1] 실습기관 자격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
- ② 『중소기업기본법』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
- ③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
- ④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- ⑤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(유치원 포함)
 - 단, 학교기업,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및 대학교의 부속기관(연구실, 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으로 별도 법인)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됩니다.
-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

※ 산업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실습생의 교육·지도·관리를 위해, 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, 등록 또는 허가된 시설 및 기업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권장 합니다(단,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·벤처 기업 등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는 대학의 판단에 따르며, 고용인원 대비 1/2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(1인 창조 기업은 2인 이하) 함께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것은 지양합니다.

[2] 실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

-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습 시작 전 3자 협약(학생-실습기관-학교)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실습을 운영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담당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. '실습기관교육담당자'를 지정 한다.
-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지도(담당)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합니다.

[3] 지원 사항 및 근무시간

- 실습기관은 협약에 따라 실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학교에서는 별도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지원금 차등 지급하며, 상해보험에 가입함
-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함



| 한남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|

오우영 ☎ 042)629-5727, ✉ wyoung07@hnu.kr

고예슬 ☎ 042)629-7176, ✉ kys7176@hnu.kr

※ 현장실습 참여절차

기업 등록 (기업) →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(학교)
 → 참여신청서(운영계획 등) 등록 (기업) → 학생 참여신청(학생)
 → 학생-기업 매칭 완료 → 3자협약

※ 모든 절차는 현장실습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예정

| 한남대학교 현장실습 통합정보시스템 |

현장실습지원센터 오시는 길



계의돈 기념관 (구, 이과대) 1층 111호